

# 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54,207,244	7,626,217
일반회계	227,609,709	6,828,291
특별회계	26,597,535	797,926
기타특별회계	26,597,535	797,92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1,816	60,054
수질개선특별회계	14,310,862	429,32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76,000	20,280
의료급여특별회계	259,200	7,776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2,274,481	68,234
주택사업특별회계	832,876	24,986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374,119	11,224
농공단지관리특별회계	2,106,300	63,189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12,300	6,369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3,405,107	102,153
기반시설특별회계	144,474	4,33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88,18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